

2022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입주 학생 선발·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인재 양성의 요람인 『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』의 2022학년도 입주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1월 10일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-10
2. 선발인원: 236명 (남학생 84명, 여학생 152명)
3. 입주자격

가.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,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, 등록 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[2008. 1. 1.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「호적법」(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]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포함)의 신입생이나 재학생

※ 신입생의 경우 지원대학 합격결과 미발표 시 대학지원수험표로 지원가능

※ 원격대학, 대학원생 제외

4. 선발기준

- 학업성적(30%) + 생활정도(70%) + 가점(5, 3점) - 감점(5점)

가. 학업성적 (30%)

- 1)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
- 2) 재학생은 당해학년 2학기 성적 (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)
- 3)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(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)

※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졸업 해당 학년 성적 제출

나. 생활정도 (70%)

- 1) 부·모·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(2021년도) 재산세 (35%)
- 2) 부·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 (35%)

※ 부·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으로 적용

※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인 경우 생활정도 확인서류는 미제출

다. 가점(5점, 3점) -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점수 적용

- 1)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의 자녀(5점)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5점)
- 3) 입주학생 중 학생 자유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입주 신청 시 7퍼센트 범위(성별 각 10명 이내)에서 관장이 추천한 자(5점)
- 4) 다자녀 가구(입주신청일 현재 2자녀 이상 가구)의 자녀(3점)
- 5)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(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)(3점)
- 6)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2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입주생 선발연도 직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(3점)

라. 감점(5점)

-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 중 기숙사 관생수칙에 의한 연간 7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된 자

마. 기타사항

- 1) 입주학생 선발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, 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함
- 2)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, 생활정도,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
- 3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(이하 “수급자 등” 이라 한다), 「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국외에 주소를 둔 재외도민(이하 “국외재외도민” 이라 한다)과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 전형자(이하 “특별전형자” 라 한다)는 정원의 10%이내(23명)로 별도 선발하며, 정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함. 다만, 국외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

5. 입주학생 자격제한

- 가. 퇴학,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. 다만, 휴학자 중 2022학년도 1학기 등록할 자는 제외
- 나.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의하여 퇴실한 자
- 다.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학기 말 2월 이내에 퇴거했던 자

6.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

※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,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사 신청이 불가함

가. 구비서류

- 1) 공통 구비서류
 - 입주신청서 1부 (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)
 -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(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)
 - 부·모,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(동일 주소지인 경우 1통)
 -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동일 내용인 경우 1통)

- 부·모·본인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각 1부
※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제출
- 부·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**21.01.01~21.12.31. 납부내역 명시**)

가입구분	준비서류
부·모 모두 가입 (맞벌이 부부 등)	◦ 부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◦ 모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부·모 한분 가입	◦ 가입자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◦ 미가입자: <u>자격득실확인서</u> 또는 <u>건강보험증 사본</u>
부·모 모두 미가입	◦ 부·모 각각 <u>자격득실확인서</u> 또는 <u>건강보험증 사본</u>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국외재외도민인 경우 거주지역 도민회장 추천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2) 학업성적 증빙서류

- 신입생
 -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
 - ※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을 시 졸업해당 학년 성적 제출(원본대조필 날인)
 - 대학합격통지서 1부 (미발표 시 대학지원수험표 제출)
- 재학생: 성적증명서 1부 (직전학기)
- 휴학생: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.

나. 기타사항

- 1) 가점 특례 대상자인 경우 가점 증명서류 첨부
- 2) 반드시 각각의 서류는 '원본' 및 '원본대조필' 확인 된 서류 제출
- 3) 신입생이 대학지원수험료를 제출한 경우 입사 등록 시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제출
- 4)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7. 입주학생 모집·선발예정 일정

가. 접수기간: '22. 01. 10. ~ 01. 28.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(<http://genius.jpdc.co.kr>)

※ 방문·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
※ 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이미지(JPG,PNG,GIF) 파일로 변환(스캔)후 첨부

입주학생 결과발표		호실추첨	등록 (기숙사비 납부기간)	입주
◦ 기초생활수급자 /국외재외도민	`22.02.10. (예정)	`22.02.14. (예정)	`22.02.15. ~02.24. (예정)	`22.02.25. ~ (예정)
◦ 재학생/신입생	`22.02.10. (예정)			

* 결과발표는 오후 늦은 시간 예정이며 지연될 수 있음

* 호실추첨 추후 공지

8. 기숙사비 및 입주기간

가. 기숙사비

기숙사비	납부기간
① 입사비: 50,000원 (퇴사 시 미반환)	◦ 1학기분: `22. 02. 24.까지 ◦ 2학기분: `22. 08. 24.까지
② 2 인실: 150,000원/월/인	
③ 3 인실: 120,000원/월/인	

나. 입주기간

1) 1학기: `22. 02. 25.~`22. 08. 24.

2) 2학기: `22. 08. 25.~`23. 02. 21.

9. 주의사항

가. 영재관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포함)의 신입생이나 재학생

(1.대학 2.산업대학 3.교육대학 4.전문대학 6.기술대학 7.각종대학)

※ 평생교육시설: 국제예술대학교, 백석예술대학교, 정화예술대학교

※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(원격대학)의 신입생 및 재학생 입사신청 불가

나.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

다.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필히 제출

10. 코로나19 관련 사항

가. 감염예방을 위하여 최초 입주 및 필요시 음성판정 결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탐라영재관 출입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(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) 등, 방역수칙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하여야 함

나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순 의심 사유로도 검사를 요청, 격리조치(출입통제)를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타 입주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음

다.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, 코로나19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, 음성판정 시(3~4일간)까지 경과 관찰

라.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
마. 접촉자 분류 연락을 받은 검사대상자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르며 음성 판정시까지 탐라영재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음성 판정이후에도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당국 역학조사 절차 이행

바. 영재관 관할 방역당국 조치 및 탐라영재관 자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며, 이와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.

11. 문의처

가.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운영사무실 (☎(02)2659-0616)

나.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남자사감실 (☎(02)2659-0680)

다.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여자사감실 (☎(02)2659-0681)